

#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### (김원태 의원 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3164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 년 월 일: 2025년 10월 19일  
발의자: 김원태 의원(1명)  
찬성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길영,  
김영철, 김재진, 김종길,  
김태수, 민병주, 윤기섭,  
윤종복, 이성배, 임춘대,  
허훈, 홍국표, 황유정  
의원(15명)

## 1. 제안이유

- 광화문광장은 연중 다양한 문화·예술·시민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대표 광장임.
- 최근 행사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고 규모 또한 확대됨에 따라, 주최측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사전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.
- 이에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확대해 행사 주최 측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, 안정적인 행사 운영과 시민 홍보,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‘광화문광장’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기간을 개정함(안 제5조).

##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60일 전부터 7일”을 “90일 전부터 5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제5조(사용허가 신청) ① 신청자는<br>사용목적과 일시, 신청자의 주소와<br>성명, 사용인원, 안전관리계획 등을<br>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광화문광장<br>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려는 날(이<br>하 "사용일"이라 한다)의 <u>60일 전부</u><br><u>터 7일</u>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<br>한다. 다만, 국가적 행사 등 공익을<br>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시장<br>이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예외<br>로 할 수 있다. | 제5조(사용허가 신청) 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<u>90일 전부</u><br><u>터 5일</u>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|
| ② (생 략)  | ② (현행과 같음)  |

##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 비대상 사유서

#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5조(사용허가 신청) 제1항의 내용을 수정하여,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 시 시장에게 사용허가서 제출기간을 변경(60일 전부터 7일 → 90일 전부터 5일)하고자 한 것으로,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[kjh0816@seoul.go.kr](mailto:kjh0816@seoul.go.kr)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